

# 수원지방법원

## 제 3 민 사 부

### 판 결

사 건 2010나19348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안◇◇ (49년생, 여)  
성남시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마○○  
피고, 피항소인 김○○ (85년생, 남)  
진주시  
제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6. 16. 선고 2009가단46704 판결  
변 론 종 결 2010. 11. 25.  
판 결 선 고 2010. 12. 9.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폐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6.부터 2010.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89,6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88,300원 및 이에 대  
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  
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로 항소하였는바,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한 것  
으로 선해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8. 5.경 피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수화물로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중소기업은행을 방문하여 피고 명의의 예금  
계좌(계좌번호 : 165-★★★732-★★-030,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나. 원고는 전화사기(속칭 보이스피싱)를 당하여 2009. 8. 17.경 이 사건 통장으로 5,989,390원<sup>1)</sup>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가 금원을 입금한 때로부터 15분 이내에 이 사건 통장에서 1,39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모두 인출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전화사기와 관련하여 사기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았는데 2009. 11. 18.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만, 대포통장을 개설한 점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어(2009고약23880)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취하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④ 피고가 이 사건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반환청구권자는 통장에 예금주로 기재된 피고인바,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그 이체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예금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④ 피고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서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서 피고를

1)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통장으로 5,989,690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체수수료 300원을 포함한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 3. 판단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일용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원고가 이체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통장 등을 제공한 상태였던 점, 원고가 계좌이체를 완료한 후 15분 만에 5,988,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점, 실제로 피고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협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통장으로 돈을 계좌이체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그 예금채권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통장에 1,390원이 남아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1,390원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3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1. 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

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당시 그 통장이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공무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나아가 비록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통장을 넘겨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 5,989,39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던 상황 아래에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경솔하게 돈을 이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기로 하되, 원고의 이체액수나 경위, 피고가 그 명의의 이 사건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동기나 경위,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 중 계좌에 남아 있는 일부 돈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함으로써 손해가 없게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금 3,592,000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3,5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1. 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환

판사      한소희    \_\_\_\_\_

판사 김태형 \_\_\_\_\_